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법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주요 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 중 철·알루미늄(2종) 표시를 “캔류”로, 플라스틱류 표시(7종)를 “페트”·“플라스틱”·“비닐류”(3종)으로 단순화(안 별표)

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외부 색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함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사용을 권장(안 제5조3호)

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 아래의 문구 “분리배출”을 삭제하고 세부재질표시가 필요한 제품·포장재의 해당 재질표시(안 별표)

라.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안 제5조4호)

마.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전단 중 “분리배출표시”를 “분리배출 표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 문자를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개·구조상 개별포장재 마다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또는 여타의 재질을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분리배출표시”를 각각 “분리배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배출표시사업자”를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로 한다.

제7조 중 “2014년 7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같은 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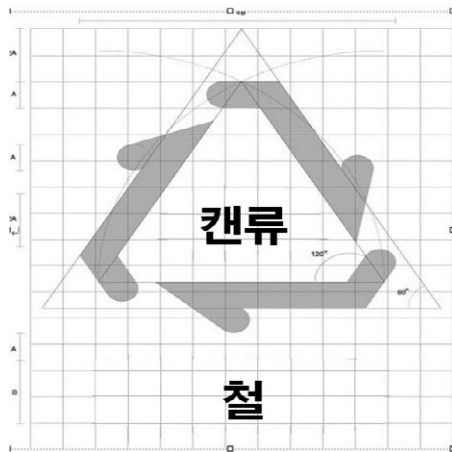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는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3. 도안 작도요령



- 비 고 1. 도안의 최소크기는 8mm이상(세부 재질표시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도안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도안 라인의 폭이 A이면, 도안 중앙부에 위치한 재질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이하인 경우 2.5A, 3자 이하인 경우 2A로 한다.
 4. 도안과 분리배출 문자의 간격은 A로 한다.
 5. 분리배출 문자의 높이가 B이면, 도안의 가로 폭은 4B로 한다.